임실군의회 공고 2015 - 31호

제250회 임실군의회 정례회에서 **「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**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.

2015. 6. 29.

임실군의회의장

1. 개정이유

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비(안 제2조)

나. 가축사육제한 지역 등의 절대 금지지역을 명확히 정하고, 상대 제한 지역의 축종(메추리)추가 및 거리에 관한사항(안 제3조 및 별표1)

※ 향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(만수위 196.5M)이 해제될 경우 수질오염방지 및 환경보존을 위하여 동일 면적인 옥정호 만수위 196.5M로 부터 1,000M를 가축사육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함.

다.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3. 참고자료

가. 관계법령 :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2015년 추경 확보(40,000천원)

다. 협의 등

1) 부패영향평가/규제심사 : 특이사항 없음

2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특이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2) 입법예고(2015. 5. 11. ~2015. 6. 1.)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4) 관련법령 발췌문

임실군 조례 제　　호

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가축이라 함은” 을 “가축”이란으로, “제2조”를 “제2조제1호”로, “사육동물(소・돼지・말・닭・젖소・오리・양・사슴・개)”을 “사육동물(소・돼지・말・닭・젖소・오리・양(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)・사슴・메추리・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가축분뇨라 함은” 을 “가축분뇨”란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사육이라 함은” 을 “사육”이란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주거 밀집지역 이라 함은” 을 “주거 밀집지역”이란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배출시설이라 함은” 을 “배출시설”이란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공공처리시설 이라 함은” 을 “공공처리시설”이란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및 제5항제2호 중 “별표1”과“별표” 를 각각 “별표 1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별표1” 을 각각 “별표 2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가축사육 제한지역(제3조 제3항 관련)

구 분	절대 금지지역	상대 제한지역
제 한 지 역	○ 군 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중 주거· 상업· 공업지역 ○ 자연환경보전 지역내 공원구역,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,000미터 이내 지역 ○ 수도법 제3조에서 정한 일반수도 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반경 1,000미터 이내지역 ○ 옥정호 만수위(196.5미터)로부터 1,000미터 이내 지역 - 단 섬진강본류 기준점은 선거교 안쪽으로 하며, 옥녀동천 기준점은 운암 순환교 안쪽으로 한다	○ 절대금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중 주거 밀집지역, 마을 회관, 모정,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, 교육 , 연구시설 , 수련시설 , 숙박시설 , 관광휴게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, · 돼지는 2,000미터 이내 지역 · 닭·오리·개· 메추리는 1,000미터 이내지역 · 소·젖소는 300미터 이내 지역 · 말·양·사슴은 100미터 이내 지역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-----.
1. “가축”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동물(소·돼지·말·닭·젖소·오리·양·사슴·개)를 말한다.	1..“가축”이란----------제2조제1호---------사육동물(소·돼지·말·닭·젖소·오리·양(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)·사슴·메추리·개)--.
2.“가축분뇨”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(糞)·뇨(尿)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·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.	2.“가축분뇨”란----------.
3.“사육”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즉석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두는 행위를 포함한다.	3.“사육”이란----------.
4. “주거 밀집지역”이라 함은 “자연부락 중 5호 이상의 인가(실거주)가 밀집된 지역”을 말하며, 주거밀집지역 주택	4..“주거 밀집지역”이란----------

간의 거리는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.	----------.
5. “배출시설”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·운동장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.	5. “배출시설”이란----------.
6. “공공처리시설”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.	6.. “공공처리시설”이란----------.
제3조(가축사육 제한지역 등) ①·② (생 략)	제3조(가축사육 제한지역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1과 같다. 또한, 축종의 변경은 기 신고나 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축사의 경우에 한하며 신고 또는 허가면적 내에서 별표에서 정한 축종별 제한거리가 동일 또는 약화된 축종으로의 변경에 한한다.	③ ----------별표 1----------별표 1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·증·개축을 제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	⑤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
2. 상대제한지역내에서 축사의 증축시는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부지면적내에서 별표의 축종별 제한거리내의 인근마을 주민 세대주 70%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단,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축종별 제한거리 100분의 50이내의 경우에는 모든 세대를 포함하여야 함.	2.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별표 1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.
제6조(수수료 등의 부과·징수) ① 군수는 법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·운반수수료, 가축분뇨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(이하 “수수료 등” 이라 한다)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한다. 다만,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징수한다.	제6조(수수료 등의 부과·징수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가축분뇨 수집· 운반수수료 가축분뇨 수집· 운반수수료는 “별표 1”에 의하여 배출하는 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.	1.---------- ---------- -별표 2---------- ---------- ----.
2. 가축분뇨처리시설 청소수수	2.----------

료가축분뇨처리시설 청소수수료는 “별표 1”에 의하여 배출하는 자로부터 청소된 양에 따라 징수한다. 3.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수료는 “별표 1”에 의하여 배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. ②(생 략)	---------- ----별표 2---------- ---------- --. 3.---------- ---------- ----별표 2---------- ---------- -. ②(현행과 같음)

【별표 1】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

「별표1」

구분	절대 금지지역	상대 제한지역
제 한 지 역	○ 군 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중 주거·상업· 공업지역 ○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공원구역,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,000미터 이내 지역 ○ 수도법 제3조에서 정한 일반수도 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반경 1,000미터 이내 지역 ○ (추가)	○ 절대 금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중 주거 밀집지역, 마을회관, 모정,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의료시설, 교육·연구시설, 수련시설, 숙박시설, 관광휴게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직선거리로, · 돼지는 2,000미터 이내 지역 · 닭·오리·개는 1,000 미터 이내 지역 · 소·젖소는 500미터 이내 지역 · 말·양·사슴은 100미터 이내 지역

개 정 안

「별표1」

구분	절대 금지지역	상대 제한지역
제 한 지 역	○ 군 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중 주거· 상업· 공업지역 ○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공원구역,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,000미터 이내 지역 ○ 수도법 제3조에서 정한 일반수도 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반경 1,000미터 이내 지역 ○ 옥정호 만수위(196.5미터)로 부터 1,000미터 이내 지역 - 단 섬진강본류 기준점은 선거교 안쪽으로 하며, 옥녀동천 기준점은 운암 순환교 안쪽으로 한다	○ 절대금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중 주거 밀집지역, 마을회관, 모정,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의료시설, 교육·연구시설, 수련시설, 숙박시설, 관광휴게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, · 돼지는 2,000미터 이내 지역 · 닭·오리·개·메추리는 1,000미터 이내지역 · 소·젖소는 300미터 이내 지역 · 말·양·사슴은 100미터 이내 지역

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반수반요인

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 고시를 위한 용역비용 50,000천원 예상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 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해당없음.

4. 작성자 : 환경보호과장 김금순

참고 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

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8조(가축사육의 제한 등)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·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.

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(사육동물)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"이란 젖소, 오리, 양(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사슴,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.